성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 성주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·근절하는 등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적극행정의 정의 (안 제2조)

○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(안 제3조)

○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 (안 제4조)

○ 위원회 구성 및 운영, 위원장의 직무, 위원의 임기 및 해촉,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, 간사, 수당 등 규정 (안 제5조~제9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

○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○ 입법예고 : 의견없음(예고기간'19. 11. 20. ~ 12. 10.)

○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강화 등 없음

○ 성별영향평가 분석 : 개선사항 없음[가족지원과-48133(2019. 11. 19.)]

○ 비용추계서 : 별도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해 8월 6일에 제정된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해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
○ 적극행정의 정의,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,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,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○ 또한, 본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, 공무원들이 책임부담과 징계 등을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적극행정을 공직 문화로 정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.